

교원인사규정

2003.12.01. 제정
2015.03.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2. 명예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사항
3. 조교에 관한 사항

제3조(임용자격) ①본교의 교원은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고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임용일자의 소급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추서 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 하는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5조(임용기간) 교원의 임용기간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 기간으로 하며,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임용기간 계산) ①임용기간 만료이전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공무로 인해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 중인 자가 그 파견 또는 출장 기간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연구년제에 해당하는 자가 연구년 기간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연구년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⑤휴직기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①정년보장 교원을 두기 위하여서는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따로 두어 심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정년보장 여부를 심사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술활동
2.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활동
3.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건학이념 구현 및 본교 발전 기여도

③위원회는 전임교수, 학교법인의 교육이사, 교외 영어교육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의 정수는 본교 교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위원 중 정년보장 심사대상자는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의2(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며, 퇴직일은 정년 해당 학기의 말일로 한다.

제2장 승진 임용

제9조(직명별 정원 관리) 총장은 교원의 연구 분위기 조성 및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실정에 맞추어 직명별로 교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격 및 요건) ①교원의 승진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승진 소요년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연한동안 최소한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타 대학의 동일직명이상에서의 재직 년 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최저 소요 년 수

가. 부교수 → 교수 : 5년

나. 조교수 → 부교수 : 4년

③교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하여는 임용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한 심사평정결과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심사결과를 취득하여야 한다.

2.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는 최근 2년간 연구실적이 200% 이상,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300% 이상으로 심사평정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교수 승진 임용 대상자, 교수 승진 임용 대상자 연구 실적물은 해외 저명 학술지 혹은 국내 저명 학술지 단독 논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되 부교수 승진에는 1편 이상, 교수 승진에는 2편 이상이어야 한다.

3. 승진기간이 재임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내의 논문은 양편에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승진을 위한 연구 실적물은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의 ‘학술논문’ 과 단행본 중 ‘전문학술저서’, ‘전공관련 일반 저술’ 만을 인정한다.

④교수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승진 제한)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②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교원은 조교수 또는 부교수에서 부교수 또는 교수로 승진할 때 정규 승진 소요년수보다 2년 이상 경과하고 임용기간 내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이 300%이상으로 심사평정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용 및 심사절차) ①총장은 매 학기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해 심사한 결과에 의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②교무처장은 승진 대상자의 임용기간내의 교원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년보장 임용의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정년보장교원임용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연구실적물의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며, 연구실적심사평정은 각

편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소명 및 재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교무처장은 이를 즉시 본인에게 통보한다.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은 교원이 심사결과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할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무처장은 소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재심사하도록 모든 소명자료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송부하고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⑤교원인사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의한다.

제13조(승진임용 시기) 교원의 승진은 매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시행한다.

제3장 재임용

제14조(임용기간 및 요건) ①교원의 능력향상과 교육 및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용기간 내의 교수업적을 엄격히 심사·평정하여 재임용한다.

②교원의 임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③교원의 재임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법령과 제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교원의 재임용은 임용 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업적 평가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한 심사평정결과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임용기간 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은 조교수 220%, 부교수 240% 이상으로 심사평정에서 적격평정을 받아야 한다.

3.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재임용기간이 승진임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기간내의 논문은 양편에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재임용을 위한 연구 실적물은 본 규정 제10조 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임용 및 심사절차) 재임용 심사절차에 대하여는 본 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재임용 제외 대상자에 대한 소명 절차) 본교에서 재임용 제외 대상자로 판정된 교원에 대하여서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본인의 진술을 들어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1회의 소환에 불응한 때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보직 임용

제17조(보임) ① 모든 보직의 임용은 법인 정관에 의하여 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② 보임 일자리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되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보임 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보임 기간은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겸직금지) 교원은 타 기관에 상근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한시적으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겸직허가절차 및 조건) ① 겸직허용 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겸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말까지 한다.

② 타 기관 겸직을 원하는 교원은 학기 개시 2개월 전에 교무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겸직허가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하며, 겸직해소원을 겸직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시수 및 외부 출강) ① 전임교원의 책임 시수는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단, 보직자의 경우 총장은 그 시수를 감하여 줄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이 외부 출강하거나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 비상임직으로 위촉될 때에는 주 1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중·고등학교 및 사설학원 등에는 출강할 수 없다.

제5장 휴직·복직

제21조(휴직) 교원이 학교법인 혁제학원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직원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의병휴직은 휴직원과 종합병원의 진단서
2. 법정의무를 위한 휴직은 휴직원과 법정의무의 발생 또는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3. 국외유학, 국제기관의 고용,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로 인한 휴직은 휴직원과 초청장 또는 고용계약서 등
4. 기타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2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3조(휴직과 근속통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가기관 추천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국외기관에 근무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제24조(복직) ①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법인정관 제45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

제25조(휴직 중 급여액의 반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고도 복직하지 않아 자동 면직된 교원은 휴직 중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직위해제 및 해임

제26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총장의 제청으로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의 급여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임면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을 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거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27조(징계) ①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및 본교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제29조(상벌) 교원의 포상과 본 규정 이외의 징계에 관하여는 법인 정관 및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인사기록) 교원의 인사관련 변동 사항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사유가 확정된 즉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1조(준용 및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 및 본교 제 규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을 준용 또는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은 교원의 직위 및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 규정 및 본교 교원신규임용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